

부산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573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강정목, 박은식

피고, 항소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김동윤, 이재현

변 론 종 결 2022. 9. 14.

판 결 선 고 2022. 11. 9.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49832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F와 피고 사이에 2016. 1. 25. 체결된 318,399,500원의 증여계약을 308,578,4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1,069,422원, 원고 B에게 33,929,052원, 원고 C에게 110,582,184원, 원고 D에게 32,997,8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G와 피고 사이에 2016. 1. 25. 체결된 318,399,500원의 증여계약을 308,578,4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1,069,422원, 원고 B에게 33,929,052원, 원고 C에게 110,582,184원, 원고 D에게 32,997,8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F, G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538,000원, 원고 B에게 25,249,000원, 원고 C에게 82,292,000원, 원고 D에게 24,5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이하의 “F, G가 공동하여”를 “F, G는 공동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송금”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5행, 제4행,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3. 피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당심 추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가 G의 계좌를 통해 F,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F로부터 증여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제1심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라고 자백한 것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빠져 진술한 것이므로,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한다(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F, G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피고 또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F가 피고에게 2015. 12.과 2016. 1.에 3억 4천만 원 정도를 증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F와 G의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위 변론기일에 진술한 피고의 2021. 1. 31.자 준비서면 제4면에는 “2016. 1.경 3억 원 정도를 F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여유자금이 있던 어머니 F가 외아들인 피고가 새로이 시작하려던 펜션사업에 지원해 주기로 하여 증여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2016. 1. 25. 이 사건 송금을 통해 F로부터 318,399,500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피고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음을 다투지는 아니한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을 제4, 8,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2016. 1. 25. 이 사건 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318,399,500원을 증여하였다는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피고가 착오로 이를 자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G 명의 계좌를 통해 X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X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1억 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율을 특정하여 합의하였거나, 이자를 요구하거나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는 2022. 4. 26.자 준비서면에서는 ‘G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X를 피고와 만나게 해 주었다’, ‘X는 본래 G를 먼저 알고 지냈기 때문에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고 하여 차용 당시에 피고와 X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고 X가 G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X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도 X와 피고는 종종 만나 술도 마시는 편한 사이였다’, ‘아는 동생인 피고가 힘들어해서 형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이자는 필요 없으니 천천히 갚으라고 했다’면서 차용 당시에 피고와 X 사이에 친분이 두터웠고 직접 대여하였다는 뜻이 진술하고 있어, 피고와 X 사이에 차용 경위나 피고와 X의 친분관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X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가 X로부터 직접 차용하였다면 통상적으로는 피고 명의 계좌로 차용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굳이 G 명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을 수령할 합리적인 경위나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

3) G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을 제8호증)에 의하면 X는 F와 여러 차례 거래관계가 있었고, 적요란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F를 통해 H에게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받은 관계에 있어 보이는 한편, G의 위 계좌는 F가 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던 계좌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X로부터 G의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역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돈일 개연성이 상당하다.

4) 피고는, F가 2016. 1. 21. W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돈을 마련한 뒤, 피고에게 펜션 사업자금으로 쓸 218,399,5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의 경우 F와 사이에서 매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등 수차례의 금전 거래 내역이 있으므로, F가 W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피고에게 대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F가 W으로부터 피고의 펜션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F는 피고에게 증여, 투자 기타 대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그 돈을 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가 피고에게 218,399,500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피고는 2017. 7. 11. G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여 F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3억 원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금 218,399,500원과 위 변제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점에서도 위 변제 주장을 믿기 어렵다.

6) 피고가 제출한 2021. 1. 13.자 준비서면을 보면, F는 2016. 1.경 3억 원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2016. 2. 이후에는 H의 지급이 명확하지 않아 자신도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더 이상 증여를 해 줄 입장이 아니어서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F는 2016. 1. 25.에는 피고에게 318,399,500원을 증여하였으나 2016. 2. 이후로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과 이와 같이 증여에서 대여로 변경된 경위나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 점에서도 F의 증여에 대한 피고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7) 피고 주장과 같이 제1심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피고가 제1심에서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러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는 변론 종결 후, 원고가 F,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8072호 손해배상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6. 1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F가 G 명의 계좌에서 318,359,500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증거(을 제23호증)와 F의 무자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을 제24호증)를 함께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11. 당시 이미 사해행위 최소의 원인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론 재개를 신청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가 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존재, ②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는 사정 및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모두 인식하여야 비로소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318,399,500원이 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상대방이 피고라거나, 송금 원인이 증여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거나, F가 사해의사로 위와 같이 송금(증여)하였음을 확인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를 모두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3호증에 의하면 317,399,500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잔금땅' 또는 '땅잔금'이라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증여가 아니라 토지 매수 자금으로 송금된 것이고, 그렇다면 토지라는 적극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책임재산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기, 판사 임상민, 판사 김영환